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13 | 2023.12.11 (2023.12.04~12.10)**I. 정부 주요 정책 동향****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4.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2023. 12. 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04~12.10)

【정부의 주요 정책】

<환경부>는 폐배터리 순환경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 착공식을 개최하였는 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부지 17,281㎡)에 들어서는 이번 집적단지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폐배터리 발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서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을 추출해서 배터리 제조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녹색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판촉, 교육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를 조성(2025년 6월에 준공 예정)키로 하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 성장과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실증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이 제공되고,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사업기회가 제공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배터리 전후방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4.7.19일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3.7.18일 공포)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대한 입법예고를 12.11.(월) 실시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바,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음.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바 ①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 추가, ②이용자 예치금의 관리기관과 운용방법 규정, ③콜드월렛(Cold Wallet)*의 보관 비율 규정, ④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규정, ⑤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에서 미공개 기준과 ⑥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 ⑦과징금 부과절차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를 개정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 공급,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등에 각각 신청하여 모두 청약에 당첨되면 선 신청분에 대하여는 유효처리하여 부부의 청약기회 확대, 청약신청자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혼인신고 지연 및 미신고 유인을 해소,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기준을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입주자선정 절차를 최대 2회 실시토록 하는 한편, 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시 미달이 발생될 때까지 입주자선정 절차가 진행되던 것을 3회까지 실시,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쿼터제 도입,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무주택 유지요건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로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횡령·배임에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게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신설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게 대한 횡령·배임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비디오물이 영화산업의 가치사슬의 하나라는 점에서 현행법상 ‘비디오물’ 개념을 ‘영화’로 통합 정의하는 한편, ‘영화’ 통합 정의를 기반으로 현행 영상산업 규율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기존의 유통방식 중심의 정의체계를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3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책임과 재정적 뒷받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진성준의원 등 14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 147건의 안건이 처리(상세내용은 아래 본문내용 참조)되었는데,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간 단위를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간 운영되어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되, 이 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 대상이 되는 상품·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용역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조건의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회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지난 12월 10일 제21대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회기 종료되었으며, 여야 합의로 **제411회국회(임시회)**가 **12월 11일부터 회기 30일간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안은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6개 부처 장관직 인선 발표로 인해 소관 상임별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법사위에서는 12/12(화) 10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형식)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2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기획재정부) 7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실행계획('23~'30) 수립(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미래를 연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자원순환 집적단지 착공(환경부) 10
-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정거래위원회) 11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금융위원회) · 12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14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4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1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5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7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8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9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9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
-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20
-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21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2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정거래위원회) 2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24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0인)..... 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의의원 등 11인)..... 25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	25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3인) ······	26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1인) ······	2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1인) ······	28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2인) ······	28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의원 등 15인) ··	29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9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진성준의원 등 14인) ······	29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	3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0인) ······	31

4.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2023. 12. 8)

[바로가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3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3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33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정무위원장) ······	34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35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35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37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38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38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40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8인) ······	41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41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42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1인) ······	43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04.~12.10.)

[바로가기](#)

- [방송통신(TMT)]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산업계 애로사항 해결
- [해외 규제] 美 정부, “외국 우려 실체(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해석규칙(안) 발표
- [지적재산권] 거래 관계에서 탈취당한 상표를 정당한 권리자가 되찾은 사례
- [바이오/헬스케어] 건강보험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환수법 시행과 대응 방안
- [소송] 우수조달물품 추가특수조건의 개정과 시사점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제2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영국 국민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논의

2023-12-04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영국 국민방문의 경제분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내년 1월에 개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하고, 지난달 진행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7차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협상계획을 면밀하게 마련하기로 함

지난 11월 영국 국민방문 계기로 채택된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영국과의 경제 협력관계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됨. 총 45건의 경제분야 MOU 체결, 투자유치2], 수주계약 체결3] 및 우리 금융기관의 런던 금융시장 활동에 대한 영국정부 지원확보 등 내실있는 성과도 거둠

정부는 ①교역·투자, ②청정에너지, ③과학기술, ④개발협력의 4대 분야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1월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한영 경제금융대화’, ‘한영 투자협력협의체’ 등 상호 교역·투자 및 금융협력심화를 위한 정부간 협의체를 즉시 신설·가동하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거시경제·교역·투자) 양국 FTA 개선, 거시경제·금융·투자협력 채널 신설 등을 통해 양국 교역·투자 활성화 추진

- 12월 중 세부 협상분야별 우리측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1월 중 제1차 한영 FTA 개선협상 개최
- '24년 내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채널 구축 및 거시경제·재정정책·금융이슈를 논의하는 한영 경제금융대화 개최
-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조속히 발효하고 이에 근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장’ 체결 추진

② (청정에너지·산업·공급망)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통한 무탄소 에너지 연대 공고화하고 핵심광물·공급망 협력 성과 창출 추진

- 정부간 제6차 ‘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히 개최해 영국 신규원전 건설 협의하고, 해상풍력 국장급 협의체도 신설·개최
- 핵심광물 공동 실무그룹 등 통해 정부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공급망 다변화, 산업협력, 공동 연구 등 가시적 성과 구체화

③ (과학기술) 과학기술 분야 정부간 협력을 체계화하고, 각 분야 협력 틀 바탕으로 협력 수준 전방위적 심화

- 과학기술 협의체 통합 운영(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차관급 혼성위원회(Mixed Committee) 개최 추진
- ‘디지털 파트너십’, ‘우주분야 양해각서’,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등 기반으로, 협력 심화를 위한 정부간 협의 추진
- 영국과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24.5월 잠정), ‘디지털 파트너십 포럼’ 등 개최를 통한 협력 강화 도모

④ (개발협력·인적·문화교류)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에 기반한 양국 개발금융기관 간 협력 고도화, 인적·문화교류 확대

- 개발협력 유상원조 분야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BII) 간 신규 협력사업 발굴
- 한·영 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1천명 → 5천명)하고, ‘한·영 창조산업 포럼’(장관급) 재개 등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22~'30)」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대전 유성구 소재)를 「글로벌 과학·산업 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실행계획('23~'30)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힘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약칭 과학벨트):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정된 "거점지구"(대전 신동·둔곡·도룡, 기초연구 거점기능)와 "기능지구"(세종·천안·청주, 사업화 수행기능) 지역

이번 실행계획은 '과학벨트 2차 기본계획'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교통, 교육, 주거 분야의 정주 환경을 고도화하고 과학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함

* 대전광역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 1차 기본계획’이 인프라 구축 등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실행계획은 과학벨트를 「국제적 정주여건을 갖춘 개방형 연구거점」으로 지속 조성하기 위해 아래의 4대 전략과제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략과제 1] 교통 여건 개선

- 세종 및 대전 도심과 연결되는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광역연결도로를 개설하여 과학벨트 접근성을 강화하고 충전권 상생발전 도모
- 오송-대전을 연결하는 BRT 노선(B1)에 과학벨트 정류소 설치를 '25년까지 완료하고, 부강역(경부선)-과학벨트-북대전IC를 연결하는 광역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용역을 '25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할 예정

② [전략과제 2] 교육시설 확충

- 과학벨트 거점지구에서 과학기술인 및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을 확충할 예정
-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직장공동어린이집 추가 설치를 '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함. 또한 유·초·중등 통합학교는 내년 2학기 개교를 목표로 공사 중

③ [전략과제 3] 주민 편의시설 확대

- 입주기관 및 주민을 위한 쉼·놀이·여가 공간을 확대하고 문화·행정·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공서를 설치하는 등 주민 편의시설 건립 추진
- '24년 말까지 과학벨트 외곽의 저수지를 리모델링하고 기존 수변 산책길과 연계하여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고, 문화복지컴플렉스 및 119안전센터 등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 시설물 건립계획을 '24년까지 수립할 예정

④ [전략과제 4] 과학기술 사업화 추진

- 과학벨트가 과학기반 산업육성 및 기초기술 사업화 지원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

< 거점지구 개발 현황 >

거점지구 실행계획('16~'21) 내용

과학벨트 2차 기본계획('22~'30) 내용



환경부

폐배터리 순환경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자원순환 집적단지 착공

2023-12-05

환경부는 폐배터리 순환경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 착공식을 개최함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부지 17,281㎡)에 들어서는 이번 집적단지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발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서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을 추출해서 배터리 제조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녹색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판촉,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를 조성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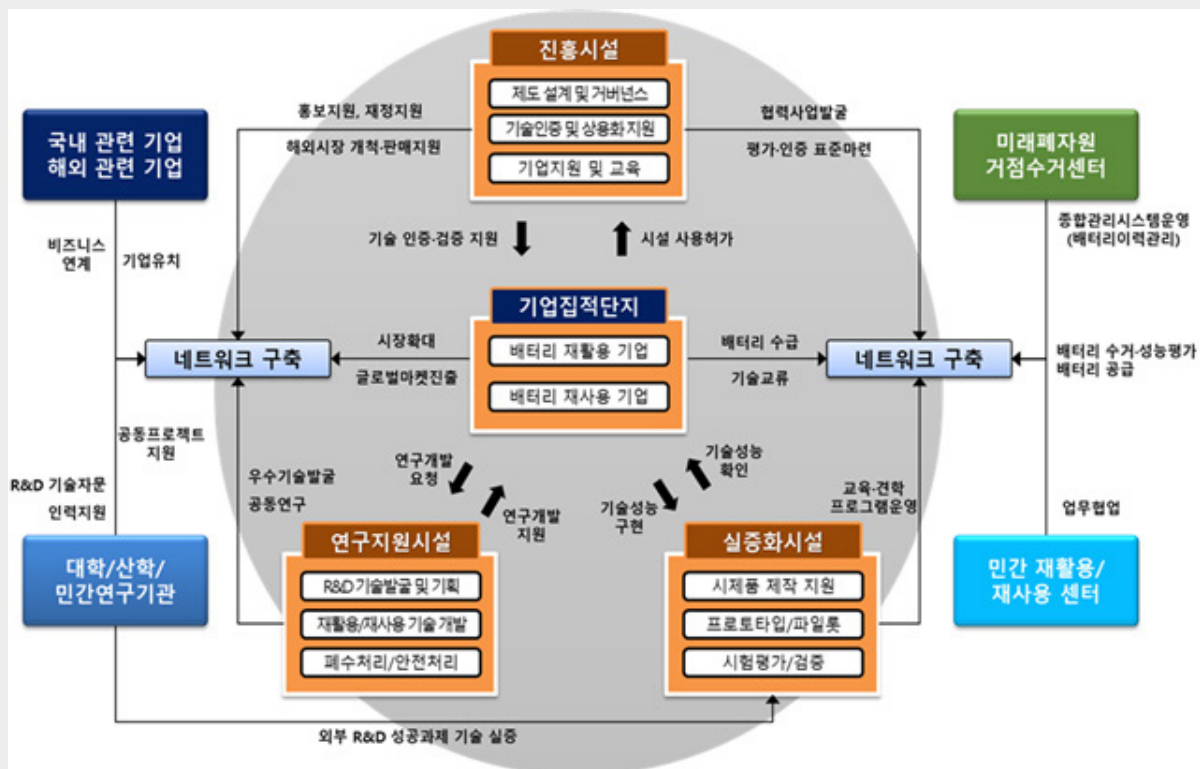
이번에 착공하는 집적단지는 배터리 산업 진흥과 연구·실증화시설을 갖춘 연구지원단지와 블루밸리, 영일만 산업단지 내 배터리 재활용기업이 입주하는 기업집적단지로 구성할 계획이며, 2025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임

주요 실증시설로는 유용 광물이 포함된 블랙 파우더(BP*) 제조, 유가금속 추출(용매추출), 폐수처리 공정시스템, 배터리 성능평가 등으로 구성됨

* BP(Black Powder)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포함된 검은색 분말로 배터리팩, 스크랩 등을 파·분쇄, 선별을 통해 생산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 성장과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실증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이 제공되고,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사업기회가 제공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배터리 전후방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함

<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의 역할과 체계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
- 공공분야 입찰 담합 감시를 위한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 확대
- 분쟁조정 제도 및 시정조치 이행관리 제도 정비

2023-12-05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들이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됨

12월 5일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하고, 공공분야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을 확대하며,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어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들이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위 소관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공정거래법 시행령	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 제외 - 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이하, ‘산학연기술지주회사’)*에 대해, 기존에는 회사설립일부터 10년 동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제외 ②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 확대 (개정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 (개정후) 기존 기관 + 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관(260개), 지방공기업(410개) (총 725개 추가, '23년 기준) ③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 (개정전)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절차는 진행 불가 → (개정후) 수소법원이 소송절차 중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 진행 가능 ④ 시정조치 이행관리 위탁 절차 마련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③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
약관법 시행령	③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

금융위원회는 '24.7.19일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3.7.18일 공포)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대한 입법예고를 12.11일(월) 실시*하였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 규정제정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바,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음.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하였음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①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 추가, ②이용자 예치금의 관리기관과 운용방법 규정, ③콜드월렛(Cold Wallet)*의 보관 비율 규정, ④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규정, ⑤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에서 미공개 기준과 ⑥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 ⑦과징금 부과절차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담고 있음

* 인터넷과 분리하여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 반대는 핫월렛(Hot Wallet)

주요 내용으로는

- ①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 NFT(Non-Fungible Token)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을 추가
 -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 예금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예금 토큰(한국은행이 관리하는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것에 한정),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 등을 제외 대상 추가
- ②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을 규정
 - 예치금 관리기관은 은행으로 결정하였으며, 사업자는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
- ③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
 - 현행 70%*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사업자는 매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그 중 80% 이상이 콜드월렛에 보관되도록 유지
- ④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을 마련
 -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
- ⑤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어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을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게 규정
- ⑥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
 -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로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⑦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를 마련

- 이상거래 감시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해당하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

II. 주요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12-08 시행

종전에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과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포장 표면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다르게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내 농수산물 가공품과 마찬가지로 포장 표면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관련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농수산물 가공품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에서 글자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제품명 또는 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그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5조, 별표 1 제2호 가목, 별표 3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14 시행예정
---------	--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공급망안정품목 및 공급망안정사업을 선정하고,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정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43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

이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절차,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절차 및 재고확대 권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제19조의2 신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하는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급망안정품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② 비상시 해외생산물품목의 반입명령 (제32조의2 신설)

- 정부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비상시 해외생산물품목의 반입명령을 하려는 경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명령을 해제하도록 함

③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등 (제33조의3 신설)

-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사용량 절감, 대체 품목 생산·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사업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하여 해당 기업에 통보하도록 함

④ 재고확대 권고 등 (제33조의5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재고량, 국내 수입규모, 수입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재고확대 품목 및 물량 등을 해당 기업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2-14 시행예정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분담시키지 않는 내용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

이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대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사업에 드는 비용의 분담 비율, 산정·부과의 방법 및 절차 등의 규정을 법률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삭제하려는 것임 (제21조, 제22조, 제27조제3항, 제31조 삭제)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1-19 시행예정

(다만,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560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

이에 따라,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신탁업자가 정비구역의 토지를 신탁받지 않고도 토지등소유자의 추천 등을 받으면 지정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공급비율 완화 (제1조의2제1항 신설)

-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비율을 종전에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함

②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요건 (제11조의2 신설)

-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③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 (제47조의2 신설)

-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중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보다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종전에는 주거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준공업지역까지로 확대함

④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요건 등 (제5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정비구역이 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도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거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건설·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함

⑤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 요건 (제80조의4)

-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 및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2.07. ~2024.01.16.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등에 각각 신청하여 모두 청약에 당첨되면 이를 모두 부적격 처리하던 것을 선 신청분에 대하여는 유효처리함으로써 부부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청약신청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더라도 배우자의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에 따라 청약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청약신청자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혼인신고 지연 및 미신고 유인을 해소하고,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기준을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며, 비규제지역에서 무순위 청약 시 청약신청자의 청약정보가 제한되고 부적격자 등과의 계약체결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입주자선정 절차를 최대 2회 실시토록 하는 한편,

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시 미달이 발생될 때까지 입주자선정 절차가 진행되던 것을 3회까지 실시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안 제23조, 제41조, 제43조)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
 -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을 위해 소득 단계별 추천자 선정방법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
- ②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근거 마련 (안 제35조의3)
 - 공공분양에서 시행예정인 신생아 특별공급 근거를 규칙에 마련
- ③ 부부 개별 신청 허용 (안 제4조, 제14조, 제19조, 제55조의2, 제57조, 제58조의5)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등에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에는 선 접수분에 대해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
- ④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 (안 제40조)
 -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
- ⑤ 배우자 이력규제 미적용 (안 제55조의3)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주택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을 미고려

- ⑥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 (안 제2조, 제19조, 제26조)
 -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시 최대 2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규제지역은 최대 3회)
- ⑦ 20세대 미만의 계약취소분 주택 공급 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 (안 제50조)
 - 불법전매 등 「주택법」위반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공급
- ⑧ 규정 미비사항 정비 등 (안 제48조)
 - 입주자저축이 필요한 청년 특별공급 등의 근거를 마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044-201-3343, 팩스: 044-201-553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2.07.
~2024.01.16.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23.8.29)」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 마련 및 상향,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을 배제하는 등의 출산률 제고와 혼인으로 인해 불리하게 적용되던 청약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쿼터제 도입,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무주택 유지요건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쿼터제 도입 (안 별표 5의2)
 - 통합공공임대주택 슬럼화 예방 및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공급 시 소득 구간에 따른 공급비율 설정
- ②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 (안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6)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특별(우선)공급 유형 신설
- ③ 맞벌이 가구 청약기회 확대 (안 별표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6)
 -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특공 제외)에 맞벌이 소득기준을 상향 및 신설하고, 상향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맞벌이 가구가 청약 가능한 추첨제 신설
- ④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우자 이력규제 미적용 (안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6)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자격에서 배제
- ⑤ 일반형 공공분양 일반공급 무주택 유지요건 완화 (안 별표6)
 - 현행 입주 시까지 무주택 유지요건을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완화
- ⑥ 기타 오기사항 정정 (별표 6의4)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기준 내 오기내용 정정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044-201-4580, 팩스: 044-201-5663)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2.08.
~2024.01.18.

저출산·고령화 대비 차원에서 기존 주택단지에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용이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약자 등 이동취약계층의 이동편의를 위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를 건축물 높이에 산정하고 않도록 정비하고자 함

또한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상 혼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시 상한에 관하여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존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용적률 완화 (안 제6조제1항제13호)

- 기존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

② 건축협정구역 건폐율·용적률 완화 범위 명확화 (안 제110조의7제1항제2호)

- 조문 취지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범위에 관하여 인용하는 관계 법령의 조문을 정비

③ 옥상 출입용 승강기 규제 완화 (안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제외되는 대상에 옥상 출입용 승강기를 포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개선에 기여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044-201-3763,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2.08.
~2024.01.18.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서에 전기차 주차대수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허가 시 한국건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동별 표시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건축물대장 항목 추가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 개선 (별지 제1호의4·제6호·제17호 서식)

- 최근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주차대수 등 기재항목이 추가되면 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서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도록 신청서식을 수정함
-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등기촉탁 신청기한이 1개월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 상에 안내문을 구를 수정함

② 건축 인허가 시 협회 의무가입 확인 (별지 제1호·제1호의4·제4호·제6호·제13호·제17호·제22호의2·제22호의5·제23호·제24호)

-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협회 가입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허가 관련 서식에 협회 회원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③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개선 (별지 제23호 서식)

- 건축허가 시 확인해야할 항목이 한국건축규정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간의 서로 다르므로 한국건축규정에 맞춰 확인하도록 함

④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개선 (별지 제24호 서식)

-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시 동별 표시를 확인하도록 별지 서식을 개정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044-201-3763,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2.08.
~2024.01.18.

최근 급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환경 및 기술 혁신과 같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 인정 기간을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의 입상 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역량 있는 건축사의 인정 기간 축소(안 제11조제1항)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 및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자격 인정 기간을 최근 5년간으로 축소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전화: 044-201-3782, 팩스: 044-201-5574)

해양수산부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2.07.
~2024.01.18.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확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연안정화의 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행위 신설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7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

이에 따라 준설품질 외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및 기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 관련 사항, 연안정화의 날 세부 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준설품질 외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명시 등 (안 제9조)

- 준설품질 외 활용 가능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조개류의 껍데기로 규정 (안 제9조제1항)
- 제1항 신설에 따라 기존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부분에서”를 “부분 후단의”로 조문 정비 (안 제9조제2항)
- 법 제18조제1항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인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을 규정 (안 제9조제3항제3호)
- 별표 3을 “활용할 수 있는 준설품질의 기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준설품질 등의 기준”으로 개정하고, 제3호에 조개류의 껍데기를 활용하는 경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 (안 제9조 별표 3)

② 법 제19조에서 기술능력이 기술인력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계되는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개정 반영 (안 제10조, 제11조, 제11조 별표 4, 제14조)

③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주기 등 규정 (안 제11조의2)

-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은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과정에 대한 교육을 5년 주기로 받되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도록 규정 (안 제11조의2제1항)
- 최초 교육과 재교육의 교육기간을 구분하여 규정 (안 제11조의2제2항)

④ 연안정화의 날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규정 (안 제13조의2)

- 연안정화의 날을 9월 셋째주 토요일로 규정 (안 제13조의2제1항)
- 연안정화주간 설정, 연안정화의 날에 대한 교육·홍보 등 행사 실시 및 유관단체 등에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3조의2제2항)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부유폐기물의 수거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 (안 제16조제2항)

⑥ 운반장비를 이용하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배출, 그 외 생활폐기물 배출,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신설된 과태료 조항에 대한 부과기준 마련 및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자구 수정 (안 제17조 별표 5)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mailto:해양수산부_해양보전과) (전화: 044-200-5305, 팩스: 044-200-5299)

해양수산부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2.07.
~2024.01.18.

오염을 발생시켜 해역관리청 등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자에게 조치 후 보고의무 부여,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확대,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기준에 자본금 추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무 신설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7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

이에 따라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 방법, 해양폐기물관리업 최소 자본금 기준 마련, 해양폐기물관리업 교육기관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법률 상 용어 등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안 제16조, 제19조의2, 제25조, 제26조, 별지 제12호서식)
 - 법 제12조 및 제15조의2에서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계되는 시행규칙에도 동일하게 개정 반영 (안 제16조, 제19조의2)
 - 법 제19조에서 기술능력이 기술인력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계되는 시행규칙에도 동일하게 개정 반영 (안 제25조, 제26조)
 - 법 제18조의 준설물질이 준설물질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인 준설물질 활용 신고서 서식의 준설물질을 준설물질등으로 개정 (안 별지 제12호서식)
- ②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절차 (안 제23조의2, 별지 제11호의2 서식)
 - 법 제17조의2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조항 신설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양폐기물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했을 때 보고 방법 및 이행보고서 행정서식 신설
- ③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자본금 기준 신설 (안 제25조제1항, 별표 4, 별지 제13호서식)
 - 법 제19조에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기준에 자본금 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해양폐기물수거업(2억원) 및 해양오염 퇴적물정화업(2억원)의 최소 자본금 기준 규정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첨부 서류 추가
- ④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 (안 제29조의2)
 - 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을 해양환경공단으로 규정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전화: 044-200-5305, 팩스: 044-200-5299\)](tel:044-200-5305)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2.05.
~2024.01.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창업투자회사 대주주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필요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주식처분명령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별표2 개정)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전화: 044-204-7726, 팩스: 044-204-7729\)](tel:044-204-7726)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필수품목 확대, 단가산정방식 변경 등 거래조건 변경 시 본부와 점주 간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포함 (안 제12조 제7호)
- ② 거래상대방을 강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것,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가맹점사업자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예외요건에 추가 (안 [별표2] 제2호 나목)
- ③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와 관련한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의 세부 절차를 마련 (안 제19조, 제27조)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http://www.kftc.go.kr) (전화: 044-200-4993 팩스: 044-200-4978)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2023-12-05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를 할 근거가 없음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총 24건, 369억3,2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 특히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105억원 규모의 배임 사건을 금융당국이 적발하고도 직접 제재하지 못함.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내부에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밖에 할 수 없었으며,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롯데카드 경영진은 자체 징계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음

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상호저축은행법」은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각 업권법의 “별표”에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횡령·배임에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안 제50조의3 및 별표 제37호의2 신설)

정무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2023-12-05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그 밖의 수취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임직원에게 행정제재를 가하기 곤란했음. 2022년 농소농협에서 약 292억원의 배임, 오포농협에서 약 52억원의 배임 사건과 중앙회에서 약 41억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했음. 따라서 횡령 및 배임에 대한 개별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횡령·배임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2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0인)

2023-12-06 발의

현행법은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의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의 비율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이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무역환경 속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 국적선사 운송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공제요건 중 전체 해상운송비용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40%에서 25%로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의원 등 11인)

2023-12-08 발의

현행법은 기업의 자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계장치 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중고품 장비를 구매하고 있어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통합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중고품을 공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소부장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소부장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4조)

행정안전위원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2023-12-08 발의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바, 빈틈없는 재난관리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 부재 시 대리자 지정제도 도입,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무이행 확보를 위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 마련 (안 제12조제2항 신설 및 제34조제1호)

-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업무정지 등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시키도록 하고,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안 제20조의2 및 제31조제1호 신설)

- 소방청장 등은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보완 또는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③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 (안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

-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불합리한 형벌규정 중 경미한 사항을 분리하여 과태료로 전환하고, 그간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총괄재난관리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 규정을 겸직하게 한 관리주체 등으로 처분 주체를 변경하는 등 불합리하고 미흡한 처벌 규정을 정비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3인)

2023-12-04 발의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동일한 영상물을 유통방식을 기준으로 ‘영화’와 ‘비디오물’로 나누고, 이에 기반하여 영상산업을 이원화된 규율체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디오산업이 쇠락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등장하며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영상산업이 구조적 변화를 맞이함에 따라, 법·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비디오물이 영화산업의 가치사슬의 하나라는 점에서 현행법상 ‘비디오물’ 개념을 ‘영화’로 통합 정의하는 한편, ‘영화’ 통합 정의를 기반으로 현행 영상산업 규율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기존의 유통방식 중심의 정의체계를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함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률의 제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함 (안 제명)

②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함 (안 제2조제1호)

③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마련 등 영화 공정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 ④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안 제13조부터 제31조까지)
- ⑤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함 (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 ⑥ 영화업자의 신고, 영화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재분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7조부터 제58조까지)
- ⑦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두고 영화필름 등 보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9조 및 제60조)
- ⑧ 영화상영관의 등록,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 및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등 영화의 상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1조부터 제76조까지)
- ⑨ 영화시청제공업의 등록, 영업의 승계 및 영화시청제공업의 준수사항 등 영화시청제공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
- ⑩ 영화제작업 또는 영화배급업의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영화제작업자 또는 영화배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
- ⑪ 영화와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안 제89조부터 제104조까지)
- ⑫ 영화단체의 설립, 영화시청제공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수수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을 규정함 (안 제105조부터 제110조까지)
- ⑬ 영화비디오법상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 (안 제111조부터 제118조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1인)

2023-12-05 발의

현행법의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저작권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을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등록제도는 저작권신탁관리제도에 따른 저작물 등록과 중복되는 절차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등록 시 제3자 대항력을 박탈하는 역할을 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동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경우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의 지출을 막고자 함. 또한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해 양도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매절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54조, 제55조 및 제136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1인)

2023-12-05 발의

현행법은 게임물 유통질서 보호를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기기·장치를 제작·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율적이고 다양한 게임 이용환경 속에서 비공식 서버·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게임물 내용을 변형 이용(Mod)하는 사례가 다수 있고, 게임제작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용에 머무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를 중죄로 규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이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기기·장치를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의 자율성·창의성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유통질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32조제1항제9호, 안 제44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45조제2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2인)

2023-12-04 발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당 기본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당 기본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제6항제5호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의원 등 15인)

2023-12-08 발의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이차전지 등의 전략기술에 대한 세계의 경쟁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기준을 발표하면서 관련 기업에 대하여 반도체 기업의 영업비밀(반도체 기업 재고, 수요, 판매 정보, 수출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에 처한 상황임

이에 전략기술보유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을 보호하여 국가·경제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7항·제50조제5항 신설 및 제14조제8항)

보건복지위원회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3-12-06 제출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경우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사유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2)

환경노동위원회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2023-12-04 발의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보수, 열악한 근로조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노동조합 가입률도 매우 저조하여 제도권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등의 한계가 있음

참고로, 2003년 울산 복구를 시작으로 2010년대에는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자복지센터’를 설립하여 법률상담, 취업알선, 인권교육 등 지원활동을 시작하였고, 2014년 서울시는 20개 구에 있는 노동자복지센터를 총괄 지원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이어 12개 시·도에서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권익센터 등을 설립하였음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책임과 재정적 뒷받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이들의 권익과 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시·도별 세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
- ③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교육·법률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④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에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 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기구로서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16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2023-12-08 발의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통보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음

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완 요구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이에,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안 제28조제6항)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0인)

2023-12-08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업계 · 정비업계 · 공익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자동차의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 · 연구 등을 실시하고 적정 정비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수입자동차의 누적 점유율이 20%(2022년 기준)에 달하고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 책정이 관련 업계의 주요 갈등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의회를 통한 정비요금의 산정 및 관리가 부재한 실정이며, 감사원이 최근 감사를 통하여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을 산정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비공임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 · 유도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또한 수입차에 대한 협의회 구성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한 적정 정비 · 수리 요금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3 신설)

4.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2023. 12. 8)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임에도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교원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 실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1만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심리 및 법률상담을 받은 건수는 5만 4,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그만큼 현재 교단에 서는 많은 교사들이 우울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임

이에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안 제2조 단서 신설),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등이 의견제출을 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또한 신설함으로써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7조의3 신설)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용역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조건의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영리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용역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 (안 제11조제2항제12호)
- ②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영리업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공정위 위원장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안 제17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건전경영,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행 내부통제 규율체계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먼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동시에, 영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운영 중인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제도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특히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등에게는 총괄적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회사 내에서 장기간, 반복적·조직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동 제도 하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내부통제등 관리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함으로써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 (안 제15조, 제16조 및 안 제22조의2 신설)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함.
-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여 내부통제위원회가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직업윤리·준법정신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

②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부여 (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 신설)

-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리조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대표이사등에게 보고하도록 함
-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하여야 하고, 총괄 관리조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관리조치와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③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의무 도입 (안 제30조의3 신설)

-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하고 금융회사는 해당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④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 (안 제35조의2 신설)

-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법령 등 위반행위의 발생경위와 정도 및 그 결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감면이 가능하도록 함
-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으로 임원 제재 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정무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정무위원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음. 특히, IMF 경제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 안정에도 크게 이바지 한 바 있음

한편, 종전 법의 유효기간이 2023년 10월 15일에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반면,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아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그간 운영되어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되, 이 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금융채권자협의회로 하여금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제2항)
- ②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업무상 책임을 면제하고자 함 (안 제34조)
- ③ 이 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함 (안 부칙 제2조제1항)

정무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에도 1년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퇴직한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의 최소 유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조합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함

또한,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당준비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립금 관련 규정을 정비함

한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은 시·도 단위 지역별로 추천한 이사회보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지배구조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용협동조합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의 고유한 제재조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에도 1년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퇴직한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게 함 (안 제11조, 안 제28조제1항제6호의2 신설)
- ②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 유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안 제19조)
- ③ 법정적립금을 신용협동조합의 손실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9조 및 제52조)
- ④ 임의적립금을 배당준비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되,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함 (안 제50조)
- 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가 아닌 임원은 시·도 단위 지역별로 추천한 이사회보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안 제71조의2)
- ⑥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의 고유한 제재조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안 제84조의2제1항)

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발급·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성매매 예약에 이용한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이는 주민등록증의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안 제24조의2 신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분실·훼손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②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제도 도입 (안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26조제1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자격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위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③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대상자에 대한 열람·교부 허용 (안 제29조제9항 신설)

-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의 제한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대상자에게 그 열람 또는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함

④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벌칙 신설 (안 제37조제1항제2호, 제3호의2 및 제8호)

-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받은 자,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 다른 사람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사용에 관한 벌칙 보완 (안 제3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민·관·연구기관 등이 자율운항선박의 연구·실증 및 시범운항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관련 규제특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보급·확산과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②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8조)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등을 통해 성능실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보급·확산 및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와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 조성,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물류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에게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운항 및 실증에 필요한 경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 ⑨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 승인 시 안전성 평가를 고려할 수 있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 ⑩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항해 승인을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 등에 따른 선박의 검사·시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규정을 마련함 (안 제21조)

-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확보의무 위반, 해상교통 위험 발생 등의 경우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

이에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발·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13항 신설)
- ②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개발·활용 및 정책 추진 등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제1항제6호의3, 제3장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고 자동차의 핵심 경쟁력과 부가가치도 엔진과 구동장치 중심에서 배터리·소프트웨어·반도체 등으로 이동하면서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역시 미래자동차로 전환되고 있음.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국중심주의 강화 등 국제정세도 불안정해지면서 공급망 불안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 대응이 필요하지만, 부품산업계의 기술 역량과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 대응 능력은 취약한 상황에 있음

국내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부품산업의 생태계를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환경 조성 및 강력한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함

특히, 미래자동차산업이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큰 만큼, 자동차 부품의 범위를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확장하고 미래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와의 융합,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품산업에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부처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활용, 전문기업 지정 등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도 커지고 있음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미래자동차로 정의함 (안 제2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안 제5조)
- ③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6조)
- ④ 미래자동차 부품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안 제 제13조)
- 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하며,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함 (안 제16조부터 제18조)
- ⑦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함 (안 제20조)
- ⑧ 미래자동차 부품에 대한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보유 중인 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게 개방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 (안 제21조 및 제22조)
- 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지원하며, 수요창출에 필요한 시범사업을 추진함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보건복지위원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최근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정부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을 담고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하여 조사·평가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도입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설 (안 제3조, 제4조 및 제6조)
 -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영업의 종류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며,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②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 규정 (안 제10조의3)
 -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③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안 제12조의3)
 -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에 대한 안전관리와 소분·조합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④ 무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 (안 제23조 및 제24조)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소분·조합·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분·조합할 수 없도록 함

⑤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평가의 면제근거 마련 등 (안 제22조)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고시가 아닌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상향하는 한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국가의 시책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파견, 용역, 일일근로, 단시간, 기간제, 비기간제한시적, 재택, 가내근로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안정적 고용상태를 보장받지 못하므로 고용되었더라도 고용된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은 취업할 의사는 가지고 있으나 통상적 조건으로 취업이 극히 곤란하므로 국가가 이들의 취업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법 제6조, 제11조, 제13조의2, 제26조, 제28조 등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제7조에서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고용 불안정과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정책의 기본 원칙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강조하여 보다 강한 추진 동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정책의 수립·시행의 기본원칙에서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건전성을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안 제3조제4호·제5호 신설 및 제6조제1항제11호)

국토교통위원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자 2006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2006년 현행법 제정 이후 부과기준 등이 제정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어 그동안 집값 상승 등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를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에 공급하는 경우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안 제2조제5호)
- ②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함 (안 제8조제1항)
- ③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기간 단위 금액을 5천만원 단위로 조정함 (안 제12조)
- ④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7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의2 신설)
- ⑤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양자(量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제어·계측·전송·저장·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은 기존 첨단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는 기술로서 미래 국방과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양자정보통신기술 육성을 위한 일부 조항만 있을 뿐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을 통하여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양자기술 선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의 추진, 상용화 촉진, 표준화 추진, 양자산업 관련 기업육성, 전문인력양성, 양자팍 지원, 양자연구센터 지정, 양자클러스터의 구축 및 국제협력 등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 ②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자전략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7조)
- ③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안 제10조)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기술개발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에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및 제13조)
- ⑤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 촉진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관련 국내외 표준화 추진, 양자산업 관련 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양자랩의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및 제18조)
- ⑦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및 대학원 중에서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교육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 ⑨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지원,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양자과학기술 관련 기업·대학·연구소의 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 체납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간접강제수단을 활용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 조항을 추가하여 사후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이용해 납부를 피하려는 체납자의 발생을 사전적으로도 예방하기 위한 것임 (안 제33조의2제4항)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12/12(화) 10:00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형식) 인사청문회
기재위	전체회의	12/12(화) 14:00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최상목)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소위	12/12(화) 10:00	- 법안 심사
	문화예술법안소위	12/12(화) 14:00	- 법안 심사
	청원소위	12/13(수) 11:00	- 청원 심사
농해수위	전체회의	12/12(화) 10:00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강도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12/14(목) 14:00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오영주)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등
국토위	전체회의	12/13(수) 10:00	-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박상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2/11(월) 10:00	중국의 탈북민 강제복송 저지를 위한 국회포럼	지성호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
	12/11(월) 10:30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	국회스타트업 연구모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2/11(월) 14:00	문화국가 조성을 위한 가칭,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유정주·도종환· 홍익표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실
	12/11(월) 14:00	민생과 직결되는 정보화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권은희·김병욱(국)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11(월) 14:00	안동댐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물산업 육성 및 안동댐 횡단교량 건설을 중심으로	김형동 의원실, 안동시의회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12/11(월) 14:00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개선방안	신현영 의원실	의원회관 5간담회실
	12/12(화) 10:00	바람직한 R&D 발전방향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	의원회관 6간담회실
	12/12(화) 10:00	우리의 미래, 난임과 가임력보존	김민석 의원실	의원회관 1간담회실
	12/12(화) 14:00	2023 한국병원약사회 정책토론회 -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성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	서정숙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2/12(화) 14:00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 학술회의 - 정당 혁신의 방향	최형두·김한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실
	12/13(수) 10:00	2022년 산재 자살 현황 국회토론회	용혜인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12/13(수) 10:00	지구촌새마을운동 학술세미나	이만희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2/13(수) 10:00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 해결 방안 정책토론회	이주환·구자근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13(수) 13:30	2023 경상북도 SUPER 화공 포럼 개최 - 은퇴 과학자 활용방안 마련하다	김형동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2/13(수) 14:00	국회 섬발전연구회 정책 토론회 - 섬인구와 다문화, 현상과 대응	김원이 의원실, 국회섬발전연구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

	12/13(수) 14:00	탄소중립과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정책방안 마련	이주환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12/13(수) 16:00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구자근·이인선 의원실, 경상북도	의원회관 1소회의실
	12/14(목) 10:00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 2차 - 의대정원 확대에 인한 이공계 이탈현상 :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측면, 바람직한 현상인가?	신현영 의원실, 보건의료특별위	의원회관 4간담회실
	12/14(목) 14:00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김형동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2/15(금) 10:00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국회 세미나	조명희·양정숙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2/15(금) 10:00	한·중·러 관계의 현주소와 미래	박병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12/15(금) 14:00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 학술회의	우원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12/16(토) 09:00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합세미나 - 사람중심 실천을 위한 작업치료 관점과 기술	강선우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자료집 등	12/13(수)	「이달의 입법민원」 (2023. 11월호) 발간	국회사무처	
	12/12(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38호(2023-26호) 발간 - 주요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국회도서관	
	12/13(수)	「Data & Law」 2023-12호 발간 - 호명: 데이터로 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12/6(수)	「금주의 서평」 제657호 발간 - 도서명 : 집단 착각 - 저 자 : 토드 로즈		
	12/13(수) 13:30	국가인권위원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 혐오와 차별의 미래: 이머징 시티즌과 함께 가는 사회적 혁신의 길	국회미래연구원	국가전략 정보센터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2/4(월) 10:00	의대정원 확대에 인한 입시 지형 변화 - 요동치는 수험생, 사교육 문제 진단	신현영 의원실, 보건의료특별위	의원회관 4간담회실
	12/4(월) 14:00	노골적인 청소년 성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정경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4(월) 14:00	무탄소에너지(CFE)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12/5(화) 13:30	대한영유아청소년돌연사학회 2023 학술대회	강기윤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2/5(화) 14:00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정책토론회	노웅래·우원식· 윤건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12/5(화) 14:00	한국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포럼 - 고부가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모색	이용호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12/5(화) 14:00	한의학 산업진흥 공공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김태호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2/6(수) 14:00	「공동주택관리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2/6(수) 14:00	제3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 -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인프라 정책방향	김민기·김정재· 최인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자료집 등	12/5(화)	「팩트북」 제106호 발간 - G20 국력평가	국회도서관	
	12/6(수)	「금주의 서평」 제656호 발간 - 도서명 : 재수사 - 저 자 : 장강명		
	12/4(월)	「이슈와논점」 2161호 발간 - 금리인상기, 대부업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입법조사처	
	12/4(월)	「NARS 브리프」 27호 발간 -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12/4(월)	「외국 입법·정책 분석」 45호 발간 - 영국의 의원소환법과 의원소환 실제 사례		

	12/6(수)	「이슈와논점」 2162호 발간 - 지방자치단체의 영어명칭 현황과 향후 과제		
	12/7(목)	「NARS 현장실태조사」 10호 발간 -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04.~12.10.)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2/05(화)	방송통신(TMT)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산업계 애로사항 해결
12/05(화)	해외 규제	美 정부, “외국 우려 실체(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해석규칙(안) 발표
12/07(목)	지적재산권	거래 관계에서 탈취당한 상표를 정당한 권리자가 되찾은 사례
12/07(목)	바이오/헬스케어	건강보험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 환수법 시행과 대응 방안
12/08(금)	소송	우수조달물품 추가특수조건의 개정과 시사점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백운일 | 전문위원

[이메일주소](#)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